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사기지·군사시설 불법촬영 등 처벌 강화〉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51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덕 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5
1. 군사기지 불법촬영 관련 국가별 규제 현황	5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벌칙규정	6

I. 개 요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고동진 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4. 15.

다. 회부연월일 : 2025. 4. 1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이 군 공항 비롯한 군사기지 부근을 돌아다니며 드론 등을 활용하여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비롯하여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 등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군사시설 등에 대한 무단촬영 행위가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II. 검토의견

1.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벌칙) ① ~ ③ (생략)	제24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는 <u>3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 <u>10년</u> ----- -- <u>1억원</u> -----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3. 검토의견

☐ 현행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승인없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묘사·녹취·측량하거나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을 발간·복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를 불법촬영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재할 처벌 수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불법촬영 적발 사례]

- 의도적으로 경계근무 중인 군인들을 속이고 보호구역에 침입, 다수의 사진 (GOP작전도로 및 철책선, 초소 등) 촬영
-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군용전기통신설비, 레이돔, 공지통신안테나 등 군사기지 내 시설을 촬영
- 허가 없이 경량항공기에 설치된 카메라로 부대 활주로 등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을 촬영
- 허가를 받지 않고 B여객기에 탑승하여 청주국제공항에 착륙하면서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군사기지 격납고 등을 촬영
- 성남공군체력단련장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군사기지인 공군성남기지 및 그 내부시설을 촬영
- 허가를 받지 않고 대구국제공항에서 이착륙하면서 군사기지인 K-2 항공작 전기지의 격납고 등을 촬영
- 허가를 받지 않고 B여객기에 탑승하여 청주국제공항에 착륙하면서 기내에 서 군사기지인 공군 C의 활주로, 비행관제시설 등 D를 동영상으로 촬영

□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쟁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 안보에 있어 정보의 취득과 이용이 중요해지고 있음. 군사기지를 불법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군사기밀 유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벌칙에서 정하는 형벌은 범죄의 불법성 정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므로, 해당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비교하여 벌칙과 위반행위 간 균형을 이루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제2항은 허가없이 제한 보호구역 안에서의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군함의 항로 방해, 군용항공기 운항을 위협하게 하는 행위, 비행장애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불법촬영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처벌의 정도가 비례성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는 동 법 및 유사 법률에서 정하는 처벌 수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동 조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례를 보면 대부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 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09

※ 참고자료

1. 군사기지 불법촬영 관련 국가별 규제 현황

국 가	규 제 현 황
미 국	- 부대 지휘관의 허락 없이 필수 군사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사진, 스케치, 모사 등 금지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부과 * U.S. CODE(The Code of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공식적으로 편찬된 성문 법령집, 6년마다 전면 개정, 매년 보완하여 발행
일 본	- 기지 울타리 밖에서 촬영금지에 관한 법령은 없음 * 최근 부대 밖에서 촬영도 지휘관이 금지하는 사례 있음
프랑스	- 군시설의 무단 침입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5,000유로 * 형법 제413-5조 - 핵발전소, 형무소, 군기지 등 국가 주요 시설 일체 촬영 금지 / 위반시 벌금 1,500~3,000유로 * 총리령 「사진기, 영화촬영기기, 기타 센서를 이용한 항공영상 촬영 금지령」(17. 1. 27.)
대 만	- 「요새보루관제구역 *」에 대한 촬영금지 * ‘공격하는 쪽은 꼭 탈취해야 하고, 수비하는 쪽은 꼭 막아야 하는’ 중요한 지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벌칙 규정

법정형	위반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킨 경우(제9조제1항제9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없이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제9조제1항제11호)
	군함의 항로를 방해하는 행위(제9조제1항제6호)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제9조제1항제10호)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제10조제1항제5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없이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제9조제1항제3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제9조제1항제4호)
	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표석·부표·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제9조제1항제5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제9조제1항제2호)
	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행위에 위반하여 설치된 장애물의 제거·장애물 소유자등의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제11조제1항,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법정형	위반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허가없이 통제보호구역,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제9조제1항제1호)
	② 허가없이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遺棄)(제9조제1항제7호)
	③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제9조제1항제8호)
	④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 군용통신에 장애 + 통신설비·전력시설 등 건축, 공작물·매설물(제9조제1항제12호)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등의 사용 제한에 위반한 장애설비등을 사용한 자(제9조제2항)
	허가없이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 상공의 비행(제10조제1항제3호)
100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행위에 위반하여 설치된 장애물의 제거·장애물 소유자등의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제11조제1항, 제10조제1항제4호)
	선박의 정박지를 변경하거나 퇴거하도록 한 관할부대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2항)
100만원 이하의 벌금	해군기지에 입항하는 선박으로 보호구역 외곽의 3해리 지점으로부터 정박지점에 이르기까지 만국선박식별 신호에 따라 그 선박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3항)